

행정자치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시개발사업 하수관로 품질확인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관 련 자 ① 경상남도 ○○○○○본부 ○○○○○과(전 ○○과) 지방○○사
무관(전 지방○○주사) ○○○

② 경상남도 ○○○○○본부 ○○○○○과(전 ○○과) 지방○○주
사보 ○○○

③ 창원시 ○○○○○국 ○○○○○과(전 ○○구 ○○○과) 지방
○○주사보 ○○○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4. 1. 4.부터 2014. 7. 14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3. 7. 12.부터 2015. 7. 10까지 경상남도 ○○○○○본부 ○○○과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구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주감독과 보조감독으로서 실무담당자였으며, 지방○○주사보 ○○○는 2014. 1. 13.부터 2014. 7. 28까지 창원시 ○○○구 ○○○과에 근무하면서 “○○지구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하수관로 부분 인수와 관련한 실무담당자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4호)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지침서 “제 5 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제57조에 따라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임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 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임회·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준공 시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경사 및 수밀검사, CCTV 및 연막 조사 등을 검사품에 반영¹⁵⁷⁾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 조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¹⁵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본부 ○○과는 국지도 00호선 “○○~○○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004. 12. 29. ○○○○(주)외 4개사와 1,219억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¹⁵⁹⁾하였으며, 2005. 6. 27. (주)○○○○○○○ 외 1개사와 36억원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¹⁶⁰⁾하여 추진하고 있다.

157) 하수관거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전체에 대해 경사 및 수밀 검사, CCTV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수관로 전체에 대해서는 경사검사,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준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가구의 5%에 대해 수밀검사, CCTV 및 오점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158) 환경부 하수67712-549호(2003.5.22.)로 하수관거 품질시험시 분리발주 또는 직접시행 하여야 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

159) 최초 공사비 1,219억원, 계약기간 2004.12.30.~2009.12.30.으로 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비 1,536억원 계약기간 2004.12.30.~2017.12.31.으로 변경계약 체결됨.

160) 2016.2.29. 총 계약금액 5,191백만 원, 계약기간 2005.07.11.~2017.12.31.으로 변경계약을 체결.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구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¹⁶¹⁾을 9·10차분 공사계약분에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며,

○○지구에는 오수관로 696.7m 및 우수관로 1,252.2m의 하수관로가 설치되었고, ○○지구에는 오수관로 247.5m 및 우수관로 198.4m가 각각 설치되었다.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도시개발사업 내 하수관로설치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품질시험, 시공현황, 인계·인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1. 하수관로 품질검사 및 분리발주 미실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에 따라 하수관로 시공 후 품질검사 시 오수관로는 수밀검사 및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 ○○○○○○본부 ○○과는 하수관로 품질검사 시 오수관로 전체 구간에 대해 수밀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오수관로 CCTV조사 75.3m를 누락하였으며, 우수관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CCTV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수관로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CCTV조사 등은 발주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도, 관로 CCTV조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시행한 공사를 자신이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로의 품질확인을 위한 CCTV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

161) ○○지구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사업현황

가. ○○지구 : 계약기간 2012. 11. 1.~2014. 3. 31, 사업비 2,857백만원, 면적 31,590㎡(35가구)

나. ○○지구 : 계약기간 2012. 11. 1.~2014. 3. 31, 사업비 923백만원, 면적 8,025㎡(12가구)

<○○ 및 ○○지구 하수관로 품질검사 현황>

구 분		관련규정	품질시험 현황	감사시 지적사항
수밀시험	오수	전체관로 대상 실시	미실시	· 오수관로 수밀검사 및 우수관로 CCTV조사 미실시 · 하수관로 품질검사 및 분리발주 미실시
	우수	-	-	
CCTV 조사	오수	전체관로 대상 실시	· ○○지구 : 33.3m 누락 · ○○지구 : 42.0m 누락	
	우수	전체관로 대상 실시	미실시	
하수관거 품질검사 발주		설치공사와 분리발주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실시	

2. 하수관로 시공 및 품질확인(CCTV 검사 등) 부적정

○○지구 오수관로 CCTV 미촬영 구간인 M/H6~기존맨홀에 대하여 현장 점검(2016. 11. 23) 시 CCTV를 촬영한 결과, 하수관로 정체로 인해 CCTV촬영이 불가능하였고, 위 정체구간에 대한 현장측량결과 M/H6~기존맨홀 구간은 간선관로 보다 낮게 시공되어 하수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수관로 CCTV 미촬영구간 조사결과>

구간	준공CCTV 촬영결과	실제 검사결과	감사시 지적사항
○○지구 M/H6 ~ 기존M/H	미촬영	관로 정체로 CCTV주행 불가, 오수관로 말단부 간선관로보다 낮게 시공 	오수관로 시공 부적정

경상남도 ○○○○○○본부 ○○과는 하수관로 CCTV조사 및 결과 판독 시 환경부 “하수관거 CCTV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1. 12. 29)에 따라 CCTV조사에 대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CCTV조사 시 연결관 접합부위 등에서 측시(결합부위 등에서는 촬영을 멈추고 360° 회전 촬영)를 실시하지 않았고, CCTV 촬영 후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CCTV 조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하수관로 CCTV조사 부적정 현황>

구분	매뉴얼상의 기준	실제 검사현황	감사시 지적사항
측시촬영	연결관 및 이음부 등 이상부위에서는 멈추고, 측시 실시	이음부 및 연결부 등 측시 미 실시 또는 간헐적 실시	CCTV조사 품질관리 부적정
보고서	조사·판독 결과를 종합하여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 작성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 미작성	

3. 공공하수도시설 인계·인수 부적정

창원시 ○○구 ○○○○과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으로 오·우수관 CCTV촬영 및 수밀 시험결과 등을 인계·인수 시 제출할 것을 통보(2014. 3. 11)하였고, 경상남도 ○○○○○본부 ○○과는 오·우수관로 CCTV 촬영결과 제출 예정임을 조치계획(2014. 3. 27)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창원시 ○○구 ○○○○과는 2014. 4. 3. 시설물 인계·인수 및 합동점검 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여부와 CCTV조사 등 품질검사 현황을 점검하여야 했으나, “○○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하수관로의 품질검사 미실시 및 누락(오수관로 수밀시험 미실시 및 일부구간 CCTV조사 누락, 우수관로 CCTV조사 미실시), ○○지구 오수관로 CCTV 미촬영 구간(M/H6~기존맨홀)에 하수정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14. 4. 15. 시설물을 부적정하게 인수하였다.

<하수관로 인계·인수 관련 협의의견 및 인수 현황>

실시계획(변경) 인가시 인수부서 협의의견	인계부서(도로과) 조치계획	합동점검 및 인수현황	감사시 지적사항
인계·인수시 오·우수관로 CCTV 촬영 및 수밀시험 실시	인계시 오·우수관로 CCTV촬영결과제출 예정	오수관로 CCTV촬영결과 만 인수	수밀시험 결과 등 인 계·인수 부적정

위와 같이 “○○지구 및 ○○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사무관 ○○○과 지방○○주사보 ○○○는 각각 실무책임이, 하수관로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주사보 ○○○는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하수관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된 구간은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하수관로 품질검사(수밀시험 및 CCTV조사) 미실시 및 누락된 관로는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